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4

# 대 전 지 방 법 원

## 제 4 형 사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24노2188 저작권법위반 |
| 피 고 인 | 1. A |
| | 2. 주식회사 B |
| 항 소 인 | 피고인들 |
| 검 사 | 조소인(기소), 박재훈(공판) |
| 변 호 인 | 변호사 한호동(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 원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고정91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5. 6. 25. |

##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홈페이지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4

의한 것이어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그 부여된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4

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창모 _____

판사 조길상 _____

판사 김하림 _____